

새만금개발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선발예정인원 : 1개 분야, 총 1명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
| 청년인턴 | 온라인 홍보 | 1명 | 채용일로부터 '24.12.31.까지 | 대변인실 (전북 군산) |

□ 주요 업무 내용(직무기술서 참조) * 주요 업무는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
| 청년인턴 | 온라인 홍보 | ○ SNS 홍보(홍보 콘텐츠 제작, 현장 촬영 등) 지원 ○ 언론 홍보(언론 모니터링, 기자대응 등) 지원 |

*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멘토링 등)

2. 근무조건

- 신 분 :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4.12.31.까지
 - * 채용일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 수 : 월 200만원 수준
 - * 정액급식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①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③ 새만금개발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④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 결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채용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사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코드 | 채용 분야 | 우대요건 |
|--|--------|--|
| 청년인턴 | 온라인 홍보 | <p>① 담당 업무와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온라인 홍보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로 제출 <p>② 담당 업무 관련 공인 자격증(개수별 차등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에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에프터이펙트) 등 관련 자격증 <p>③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 언론·홍보, 디자인, 그래픽, 웹디자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p>④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모전 당선 실적(최대 5건, 건별 차등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체표창 제외)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수여기관 증명서 등)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 <p>※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p> <p>※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p> <p>※ 경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p> | | |

□ 직무기술서

| 코드 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청년인턴 | 온라인 홍보 | 청년인턴 | 1명 | 대변인실 (전북 군산)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홍보(홍보 콘텐츠 제작, 현장 촬영 등) 지원 ○ 언론 홍보(언론 모니터링, 기자대응 등) 지원 | | | |
| 필요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공직윤리, 공직가치, 국민소통공감 ○ (직급별)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
| 필요 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 ○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및 기획, 메시지 개발을 위한 지식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및 메시지 작성 능력 ○ 기관 협업 및 디지털 캠페인(온라인 이벤트) 관련 실무적 지식 | | | |
| 응시자격 | 연령 | <p>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 제3조상 청년(19세 이하~34세 이하)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p> <p>▶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p> | | |
| | 제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새만금개발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
| 우대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당 업무와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온라인 홍보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p>*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p> <p>*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로 제출</p> ② 담당 업무 관련 공인 자격증(개수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에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에프터이펙트) 등 관련 자격증 ③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방송, 언론홍보, 디자인, 그래픽, 웹디자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④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모전 당선 실적(최대 5건, 건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체표창 제외) <p>*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수여기관 증명서 등)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 | |
| <p>※ “응시자격”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p> | | | | |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 합격배수를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시험 일정

| 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24.8.2.(금)~ 8.12.(월) | '24.8.7.(수)~ 8.12.(월) | '24.8.14.(수) 예정 | '24.8.16.(금) 예정 | '24.8.21.(수) 예정 |

- ※ 공고 및 발표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8. 7.(수) 09:00 ~ 2024. 8. 12.(월)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메일(somethings9798@korea.kr)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메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청년인턴)]”으로 기재
-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도달)한 건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 마감일 18:00시 이후 도착한 메일은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063-733-1040(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7. 제출 서류

- ※ 아래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가. 필수서류

1) 별지서식 제1~7호(서명본) 각 1부

- * ①체크리스트, ②응시원서, ③이력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 동의서, ⑥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⑦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2)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1부

나. 우대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직급), 근무형태(상근여부)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업무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제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로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

2) 관련 직무 분야 자격증(시험) 사본 또는 취득 증명서

- * (홍보)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등 관련 자격증

3) 채용 분야 관련 학과 재학(휴학) 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4) 관련 직무 분야 공모전 당선 실적 증명서

다. 공통 사항

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재학/휴학증명서 등) 1부

- * 전형위원 제척·기피를 위해 활용(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063-733-1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크 리 스투

※ 아래 순서대로 편철(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에 체크(√) 표시

- 1.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 2. 이력서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미제출
- 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출 미제출
-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제출 미제출
- 7. 주민등록초본 제출 미제출
- 8. 우대요건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 미제출
 - 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미제출
 - 나. 자격증 제출 미제출
 - 다. 전공학과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재학(휴학)증명서 제출 미제출
 - 라. 공모전 당선 실적 제출 미제출
-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재학·휴학 증명서 등)(해당자만 제출) 제출 미제출

20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 기재
(예) 청년인턴(온라인 홍보)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③ 지원코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기재
(예) 청년인턴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지원코드** : 지원하고자하는 코드 작성 (예) 청년인턴
- ③ **성명, 생년월일, 응시요건** :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 작성
 - * 성별 : 남, 여 중 해당 사항 작성
 - * 응시요건: 해당하는 자격요건(19세~34세)에 표시
- ④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작성 (예) 청년인턴(온라인홍보)
-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 공고상 제시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경력】 공고상 제시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공모전】 공고상 제시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공모전 당선 실적만 기재

【자격증】 공고상 제시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기타】 공고 상 제시한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기타 자격증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이력서에 기재한 우대요건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기소개서

| | | | |
|----|--|------|----------------|
| 성명 | | 응시분야 | 청년인턴 (응시분야) |
|----|--|------|----------------|

【작성요령】 ※ 삭제 후 작성

-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분량 준수)
- ③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자체 : 굴림체, 글자크기 : 13포인트, 줄간격 160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목 록 | 해당여부 |
|--|---|
| ① 피성년후견인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
|---|--|
|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